

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 실시 관련 안내

- 보건복지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의 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

- 복지부(심평원)에서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에 대한 모니터링(2년)을 통해 급여 기준, 수가 조정 등의 검토 및 제도 보완 추진 예정.

* 관련근거 : '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'18.11.29.)

- 이에,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의 실시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중.

□ 회원 협조 요청 사항

- 행위정의를 참고한 적정 추나요법 시행

-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은 표준화된 시술이 요구되는 급여 행위이며, 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업무량, 진료비용, 위험도를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되었으므로, 행위정의를 참고한 적정 추나요법 시행.

*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기준(급여대상 질환, 수진자당 횟수제한, 시술자당 인원제한, 요양병원 급여제한)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재검토될 수 있음.

* 다만, 행위정의 상의 '시술시간'은 전형적인 시술시간으로, 시술자의 숙련도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목적이 달성된 경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시술을 종료할 수 있음.

☞ 행위정의 상의 시술시간은 추나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환자교육,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한 환자상태 확인(시술 전), 추나요법 실시(시술 중), 실시 후 환자상태 관찰, 주변 정리정돈(시술 후) 등 추나요법 실시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함.

○ 진료기록부 작성

- 추나요법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, 진료기록부는 적절한 청구의 근거로 활용되므로, 관련 내용(환자의 증상, 시술 부위, 활용기법, 시술 후 환자 반응 등)을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되 제3자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.
- *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을 진단한 근거로서, 임상양상, 신체검사 소견, 영상 자료 소견 등을 기록.
- * 추나요법 치료부위 기록(해당 근육이나 관절 또는 두경부, 상지부, 흉요추부, 골반부, 하지부 중 치료부위)
- * 적용 추나기법 기록(세부 적용기법 또는 근막추나, 관절가동추나, 관절신연추나, 관절교정추나, 탈구추나 중 해당 유형 기록)

□ 추나요법 행위정의

○ 추나요법_[단순]

행위명	단순추나요법
관련학회	척추신경추나의학회, 한방재활의학과학회
정의	한의학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(근육, 인대, 근막, 건)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(관절가동추나, 관절신연추나, 근막(경근)추나 해당) * 관절가동추나: 두법(抖法), 요법(搖法), 염법(捻法) * 관절신연추나: 견인법(牽引法), 배법(背法) * 근막추나: 안법(按法), 나법(拿法), 추법(推拿), 진법(振法), 곤법(滾法), 유법(揉法), 꺾법(掐法), 날법(捏法), 날척법(捏脊法)
적응증	관절의 가동장애, 관절좁힘 및 근막(근육,인대,근막,건) 문제로 야기되는 제반 근골격계 질환(M, S, T코드)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, 부정렬(M, S, T코드)
실시방법	1. 치료대 위에 환자를 적절히 위치시킨다. 2. 치료 전: 사진(四診)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부위 및 치료방법을 결정한다. 3. 치료 중: 환자에게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, 한의학사의 접촉부위, 힘의 강도와 방향, 환자의 접촉점 등을 고려하여 관절가동 기법, 관절신연기법 또는 근막기법으로 치료한다. 4. 치료 후 :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재평가 한다. 5.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종료한다. ● 치료 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및 검토, 영상 검토 2)검사결과 판정, 검진평가, 치료계획 수립과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중 행위에는 1)면대면 진료행위, 2)수기교정 사전 단계(촉진, 연부조직관리 등) 3)수기교정 4)수기교정 사후단계(연부조직관리, 재평가)와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2)진료 상담(관리교육) 3)진료기록 보고와 같은 행위 포함.
시술시간	- 시술 전: 5분 내외 - 시술 중: 5분 ~ 10분 내외 - 시술 후: 5분 내외

○ 추나요법_[복잡]

행위명	복잡추나요법
관련학회	척추신경추나의학회, 한방재활의학과학회
정의	한의학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 또는 근육(경근)조직에 단순추나기법(관절가동추나, 관절신연추나, 근막추나)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,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(관절교정추나)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* 관절교정추나(순강교정기법): 반법(搬法), 채교법(踩蹠法), 배법(背法)
적응증	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,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, 비대칭성이 있는 제반 근골격계 질환(M, S, T코드)
실시방법	1. 치료대 위에 환자를 적절히 위치시킨다. 2. 치료 전: 사진(四診)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부위 및 치료방법을 결정한다. 3. 치료 중: 환자에게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, 한의학사의 접촉부위, 힘의 강도와 방향, 환자의 접촉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추나기법으로 이완 후 고속저진폭기법으로 치료한다. 4. 치료 후: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재평가 한다. 5.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회복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종료한다. ● 치료 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및 검토, 영상 검토 2)검사결과 판정, 검진평가, 치료계획 수립과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중 행위에는 1)면대면 진료행위, 2)수기교정 사전 단계(촉진, 연부조직 관리 등) 3)수기교정 4)수기교정 사후단계(연부조직관리, 재평가)와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2)진료 상담(관리교육) 3)진료기록 보고와 같은 행위 포함.
시술시간	- 시술 전: 5분 내외 - 시술 중: 10분 ~ 15분 내외 - 시술 후: 5분 내외

○ 추나요법_[특수(탈구)]

행위명	특수(탈구)추나
관련학회	척추신경추나의학회, 한방재활의학과학회
정의	한 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(dislocation)이 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골(正骨)교정 기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행위
적응증	관절의 탈구 상태(견관절, 주관절, 악관절, 고관절 등)
실시방법	1. 치료대 위에 환자를 적절히 위치시킨다. 2. 치료 전: 사진(四診)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해당 탈구관절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부위 및 치료방법을 결정한다. 3. 치료 중: 해당 관절에 따라 치료 방법 상이함(견관절은 하방으로 견인하여 이격 후 견관절내로 정위치, 턱관절은 단측탈구와 양측탈구로 구분하여 정복, 주관절과 고관절은 견인 후 정위치 정복 등) 4. 치료 후: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재평가 한다. 5. 환자가 안정을 취하게 하고 회복 상태를 관찰하고 관절보호처치를 시행 후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종료한다. ● 치료 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및 검토, 영상 검토 2)검사결과 판정, 검진평가, 치료계획 수립과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중 행위에는 1)면대면 진료행위, 2)수기교정 사전 단계(촉진, 연부조직 관리 등) 3)수기교정 4)수기교정 사후단계(연부조직관리, 재평가, 관절보호 처치)와 같은 행위 포함. ● 치료 후 행위에는 1)진료기록 작성 2)진료 상담(관리교육) 3)진료기록 보고와 같은 행위 포함.
시술시간	- 시술 전: 20분 내외 - 시술 중: 40분 또는 그 이상 - 시술 후: 20분 내외

- 붙임 : 1. 추나요법 관련 협조 요청안내(심평원)
2. 추나요법 행위정의

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전송

- '19.4.8. 진료분부터,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함.
- 추나요법 진료수가 청구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.
 - '요양기관기호, 환자 주민등록번호, 진료일자, 한의사 면허번호, 수가코드' 항목에 대해, 청구명세서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가 완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조정.

□ 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) 기재

- '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(한의협 주관)'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산정.
 - 추나요법 청구 시 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,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등)을 기재 하지 않은 경우, 추나요법 산정 가능 한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심사 조정.
- ※ 「국토부 행정해석(자동차운영보험과-2115호) 관련 Q&A-「19.4.9.」에 따라, JJ007 기재 항목(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면허종류, 면허번호, 실시일자 및 시간) 중 '실시시간'의 경우 시술 전·중·후를 포괄하는 실시시간을 기재하되,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.
- ※ 또한, 협회에서 기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'실시시간 기재 여부와 심사는 전혀 무관'한 것으로 심평원과 협의된 바, '실시시간(또는 재원시간)'을 기재하지

않으셔도 무방하며, 추후 확정될 관련 고시에서는 ‘실시시간 기재’ 조항을 삭제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됨.

※ 다만, 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) 기재항목 중 ‘추나요법 실시 한의사의 면허 종별 및 면허번호’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

* 관련 안내문 :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국토부 행정해석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
(협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협회공지사항 334번 게시글)
[안내문 바로가기](#)

□ MT055(명일련 단위 특정내역) 기재

○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월평균(또는 주평균) 1일 18명까지 인정 가능.

- 추나요법 청구 시 MT055(명일련 단위 특정내역,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)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,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급 지연.

□ 회원 유의사항

○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전송하고, 청구 시 특정내역(JJ007, MT055)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.

-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, 해당 특정내역의 기재 여부 확인 요망.

※ ‘한의맥’의 경우, JJ007(실시시간기재 제외), MT055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으나, 청구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.

※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청구명세서 점검 결과, 청구명세서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 불일치 및 JJ007, MT055 미기재명세서 다수 확인.